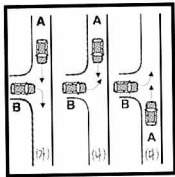


운 / 전 / 자 / 를 / 위 / 한 / 차 / 량 / 정 /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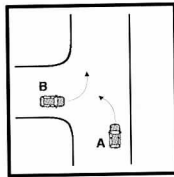
# T자 및 직선도로에서의 과실 상계

지난 2개월동안 교차로에서 사고시 과실상계에 대해 안내하였고,  
이번 호에서는 T자 및 직선도로, 비보호에서 접촉사고시 과실상계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자 한다.

## 1. T자 교차로



〈직행차와 좌·우회전차〉



〈좌회전차 상호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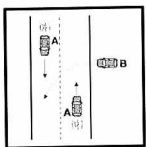
기본과실  
A : B = 30 : 70

기본과실  
A : B = 40 :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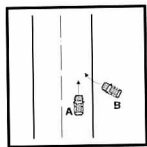
### 수정요소

지난호 중 “신호등 없는 교차로”와 “신호등 없는 도로폭이 비슷한 교차로”의 과실도표인 수정요소를 필요에 따라서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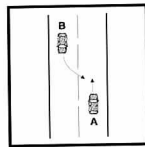
## 2. 도로외 출입차와 직진차



노외차량이 도로를 가로 질러 좌측으로 진입 (좌회전)하는 경우



노외차량이 우측으로 진입 (우회전)하는 경우



도로를 좌회전하여 노외로 나아가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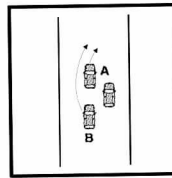
기본과실 A : B = 20 : 80

### 수정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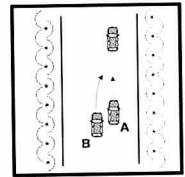
① 노외에서 현저하게 가속하여 나오는 경우 : B

차 과실 10% 추가 ② 간선도로인 경우 : B차 과실 5% 추가 ③ 노외차가 머리를 내밀고 대기할 경우 : B차 과실 10% 과실 ④ B차가 기좌회전한 상태 : B차 과실 10% 감소 ⑤ 쌍방 공히 현저한 과실, 중과실인 경우 : 과실 10~20% 조정

## 3. 추월차량



a) 추월금지장소 : 이중추월



b) 추월 위험장소

기본과실 A : B = 0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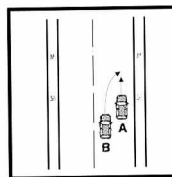
### 수정요소

가. A에 피양무 위반이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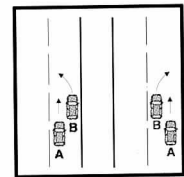
기본과실 A : B = 10 : 90

나. A가 B의 추월을 방해한 경우

기본과실 A : B = 30 : 70



c) 기타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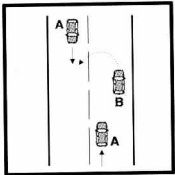
d) 추월하고 있는 B차를 A차가 다시 추월하는 경우

**수정요소**

가. A에 피양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 기본과실 A:B는 c) 20:80, d) 30: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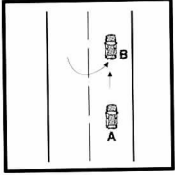
나. A가 B의 추월을 방해한 경우 : 기본과실 A:B는 30:70임 ① B차가 적법하게 진로 변경의 신호를 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② A는 B가 추월하는 과정에 미리 전방에 있었으므로 B의 끼어들기를 알아차리고 안전하게 주의운전을 하여야 한다.)

**4. 회전차와 직진차**



B차가 회전중에 충돌한 경우

기본과실  
A : B = 20 : 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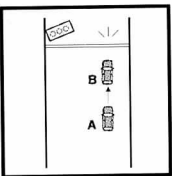
B차가 회전 종료후에 충돌된 경우

기본과실  
A : B = 40 : 60

**수정요소**

- ① B의 신호 불이행 : 과실 5~10% 추가
- ② 회전 위험장소 : B의 과실 5~10% 추가
- ③ 회전 금지장소 : B의 과실 10~20% 추가
- ④ A의 현저한 전방 주시 태만 : 과실 10~20% 추가

**5. 추돌사고**



기본과실  
A : B = 100 : 0

**수정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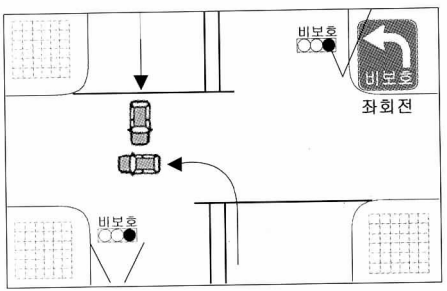
(안전거리 미확보 일방과실)

※ 단,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이유 없이 B차량이 급정거하는 경우 : B차에 20% 과실

**과실의 판결 예**

1. 같은 방향 뒤에서 진행한 오토바이가 앞서가는 버스 뒤 좌측 추돌한 경우 당시 버스운전사에게 감속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71다 736 대법원)
2. 앞 뒤차의 추돌사고 경우 앞차의 과실도 일부 있다고 본다.(73다 397 대법원)
3. 동일방향에 앞서가던 자전거가 1차 충돌사고 내고 넘어진 것을 뒤차가 안전거리 미확보하여 충돌하였다면 과실이 인정된다.(81고단 3655 서울형사지법)
4. 선행차량을 동일방향 뒤에서 오고 있는 차량의 안전거리 확보, 과속 등을 예상하여 후방을 주시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87노 515 대법원)

**5. 비보호 좌회전 사고**



비보호 좌회전 지역에서의 사고는 좌회전하던 차가 항상 신호 위반의 책임을 진다.

비보호 좌회전 표지판에 의해 좌회전이 허용된 지역에서 좌회전하다 직진차량과 충돌했다면 좌회전 차량은 신호 위반에 해당하므로 특례법 10개항에 저촉된다.

**비보호 좌회전차량의 교통사고와 신호위반에 대한 법원 태도**

비보호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다가 자기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상대차량(맞은편) 또는 보행자와 충돌한 사고는 신호위반 적용처리 한다.(판례) 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로 인사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해차량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